##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헌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502

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이헌승·박성훈·김 건

윤상현 • 박덕흠 • 서일준

서범수 · 이상휘 · 송석준

임이자 • 백종헌 • 주호영

김도읍 • 정연욱 의원

(14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, 사회적 역 할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「사회보호법」 폐지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 보호감호소 문구 삭제와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법제처 법률정비의견 반영 등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「사회보호법」 폐지 및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보호감호소를 삭제하고 치료보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변경하며,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

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하며 필 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 하려는 것임(안 제4조, 제12조제8항 신설 등).

###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5호다목 중 "보호감호소·치료감호소"를 "국립법무병원" 으로 한다.

제1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제6항 또는 제7항 후단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23조제1항 중 "개인 및"을 "출판업체 또는"으로 한다.

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·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도서관의 구분) ① (생	제4조(도서관의 구분) ① (현행과
략)	같음)
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	2
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	
이 구분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특수도서관: 특수한 환경에	5
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	
를 제공하는 시설로서, 다음	
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.	
가.・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다. 교도소・보호감호소・치	다 <u>국립법무병원</u>
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	
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	
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	
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	
제12조(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)	제12조(국가도서관위원회의 구성)
① ~ ⑦ (생 략)	① ~ ⑦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⑧ 제6항 또는 제7항 후단에
	따라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 및
	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
	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.
<u>⑧</u> (생 략)	<u>⑨</u> (현행 제8항과 같음)
제23조(국제표준자료번호) ① 도	제23조(국제표준자료번호) ①

서 또는 연속간행물(온라인으로 발행 또는 제작되는 도서 및 연속간행물을 포함한다)을 발행 또는 제작하고자 하는 공공기관, 개인 및 단체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(이하 "자료번호"라 한다)를 부여받아야 한다.

#### ②・③ (생략)

제5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 및 시·도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수 있다.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·도지사 및 시·도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 여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<u>출</u> 판업체 또는

####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·도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증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협회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.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할 수 있다.